

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이라 함은 이사, 사외이사, 미등기 임원을 말한다.

제3조 (임원 자격기준)

- 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.
- ②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,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2. 이사회가 중요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 이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

제4조 (확인절차)

- ① 회사는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제 3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